

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(제14조제2항 관련)

필기시험 과목(40점)	범 위
예비군 법령(15점)	「예비군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
병역법령(10점)	「병역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예비군 훈령(10점)	예비군 조직·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
통합방위법령(5점)	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비고

1. 법령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.
2. 시험내용은 시험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정내용을 포함한다.
3. 전 과목 4지 단일 선택형으로 출제한다.
4. 전체 문항 수는 80문항이며, 1문항 당 배점은 0.5점으로 한다.